

공 보

제684호 2019. 2. 13.(수)

| | |
|--------|-------|
| 선 결 | 기관의 장 |
| |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9-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2
 거창군 고시 제2019-16호 도로명주소 고시 3
 거창군 고시 제2019-17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4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9-173호 클린지킴이 음성 CCTV(스마트경고판)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5
 거창군 공고 제2019-177호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9
 거창군 공고 제2019-178호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8
 거창군 공고 제2019-180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96호선 외1)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33
 거창군 공고 제2019-183호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35
 거창군 공고 제2019-185호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42
 거창군 공고 제2019-188호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공고 48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고시 제2019 - 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거 창 군 수

| | | | |
|------------------------------|------------|-----------------------------|-----------------------|
| 신 청 인 | 거창군수(건설과장)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 하 천 명 (하천등급) | 거창위천(지방하천) | | |
| 공 사 (점용 · 사용) 개요 | 위 치 | 마리면 율리 940-7번지 | |
| | 면 적 | 806.0m ² | |
| | 점용기간 | 2019년 2월 12일 ~ 2019년 6월 11일 | |
| | 목적 및 사유 | 구)장풍교 철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 |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2. 12.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거창88로 740 등 9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 비고 |
|-----------|-------|--------|-----------------|----|
| (별 도 열 람) | | | |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붙임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1부. 끝.

고시 제2019 - 17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거 창 군 수

| | | | |
|------------------------------|------------|---|--------------------------------------|
| 신 청 인 | 조 정 현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13, 305호(사랑채아파트) |
| 하 천 명 (하천등급) | 분계천(지방하천) | | |
| 공 사 (점용 · 사용) 개요 | 위 치 | 북상면 병곡리 1191번지 등 2필지 | |
| | 면 적 | 60.0m ² | |
| | 점용기간 | · 당초 : 2017년 1월 20일 ~ 영구 · 변경 : 2017년 1월 20일 ~ 2021년 12월 31일 | |
| | 목적 및 사유 | 단독주택 건립에 따른 진,출입로 사용 | |

클린지킴이 음성 CCTV(스마트경고판)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클린지킴이 음성CCTV(스마트 경고판)』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8일

거 창 군 수

1. 행정예고명 : 클린지킴이 음성CCTV(스마트 경고판) 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2. 시 행 청 : 경상남도 거창군
3. 행정예고기간 : 2019. 2. 8. ~ 2019. 2. 28.(21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9. 2. 8. ~ 2019. 2. 28.(21일간)
5. 행정예고(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주요내용
 -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분리배출 유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녹화
- 설치위치

| 순번 | 읍 면 | 설 치 장 소 | 비 고 |
|----|-----|------------|-----|
| 계 | | 총41개소 | |
| 1 | 거창읍 | 시장1길 20 | |
| 2 | | 죽전7길 13 | |
| 3 | | 동변리 460-4 | |
| 4 | | 대동리 105-4 | |
| 5 | | 대동리 10-52 | |
| 6 | | 강남로 174-1 | |
| 7 | | 학리 916-7 | |
| 8 | | 중앙로 41-12 | |
| 9 | | 상동9길 14 | |
| 10 | | 거창대로 62 | |
| 11 | | 아림로2길 62 | |
| 12 | | 죽전길 65 | |
| 13 | | 강남로1길 158 | |
| 14 | | 거함대로4길 82 | |
| 15 | | 강남로3길 14 | |
| 16 | | 중앙로1길 94 | |
| 17 | 웅양면 | 동호리 868 | |
| 18 | | 한기리 915 | |
| 19 | | 신촌리 174-1 | |
| 20 | 고제면 | 개명리 1626 | |
| 21 | | 농산리 188-8 | |
| 22 | | 궁항리 806-10 | |
| 23 | 북상면 | 병곡리 1009-1 | |
| 24 | | 병곡리 69 | |
| 25 | 위천면 | 황산리 643 | |

| 순번 | 읍 면 | 설 치 장 소 | 비 고 |
|----|-----|----------------|-----|
| 26 | 마리면 | 지동길 9 | |
| 27 | | 고학길 233 | |
| 28 | | 말흘리 849-1 | |
| 29 | 남상면 | 대산리 1109-1 | |
| 30 | | 춘전리 362-7 | |
| 31 | | 월평리 2087 | |
| 32 | 남하면 | 남하면 둔마리 산387 | |
| 33 | | 남하면 둔마리 산387 | |
| 34 | | 남하면 대야리 산149-3 | |
| 35 | 신원면 | 과정리 952-1 | |
| 36 | | 구사리 662-4 | |
| 37 | 가조면 | 상수월길 68 | |
| 38 | | 우륵1길 65 | |
| 39 | 가북면 | 우혜리 2076-10 | |
| 40 | | 몽석리 194-2 | |
| 41 | | 박암리 442-2 | |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청 환경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 거창군청 환경과

○ 팩스 : 055-940-3759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문 의 처 : 거창군청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 055-940-3503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 | | | |
|--|-------------------------------|--|----------------|---|
| 행정예고명 | 클린지킴이 음성CCTV(스마트 경고판) 설치 행정예고 | | |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주민(법인) 등록번호 |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설치예정위치 | 의견제출 내용 | | | |
| | | | | |
| <p>클린지킴이 음성CCTV(스마트 경고판)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 출 자 (서명 또는 인)</p> | | | | |
| <p>거 창 군 수 귀 하</p> | | | | |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2. 개정이유

- 환경위원회 회의가 일정하게 정하여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몇 년에 한 번씩 개최되어 현 실정에 맞게 비상설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항)
- 나. 위원의 임기 조항 삭제(안 제3조)
-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함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2. 12. ~ 2019. 3. 3.(20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환경과

- 전화번호 : 055)940-3493

- FAX : 055)940-3759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군의회 의장이”를 “군의회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안건이 생기면 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 구성하고, 해당안건에 대한 심의 등을 마치면 자동 해산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제7조제2항 중 “소관업무”를 각각 “환경정책업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u></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거창군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전총괄과장, 수도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u>자로</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군의회 의장이</u> 추천하는 의원 2. 대학교수 및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그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u>자</u> 3. 관내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및 지역언론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u>자</u>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 <p><u>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u></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거창군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전총괄과장, 수도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u>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u>사람으로</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군의회에서</u> 추천하는 의원 2. 대학교수 및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그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u>사람</u> 3. 관내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및 지역언론협회 등에서 <u>추천하는 사람</u> <p>③ <u>위원회는 회의안건이 생기면 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 구성하고 해당안건에 대한 심의 등을 마치면 자동 해산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p> <p>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p> <p>1. <u>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u></p> <p>2. <u>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u></p> <p>3. <u>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 <p>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u><삭 제></u></p> <p><u><삭 제></u></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u>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u></p> |
| <p>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u>소관업무 담당주사</u>가 되고, 서기는 <u>소관업무 담당자</u>가 된다.</p> <p>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p> | <p>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u>환경정책업무 담당주사</u>가 되고, 서기는 <u>환경정책업무 담당자</u>가 된다.</p> <p><u><삭 제></u></p>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 건 | 비 고 |
|--------|-----|-----|
| |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1호, 2018. 10. 30, 일부개정]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제10조(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환경위원회를(이하"환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군수가 관계공무원, 군의회의원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환경보전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환경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환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현행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거창군 환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거창군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전총괄과장, 수도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대학교수 및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그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3. 관내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및 지역언론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자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을 누설하여 민원 등을 야기하는 경우
4.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2. 개정이유

-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2010.11.30.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한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이내에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자문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이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녹색성장위원회를 폐지 정비함(안 제3장)
제정 시행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자문기관으로서의 존속시킬 이유가 없어 폐지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2. 12. ~ 2019. 3. 3.(20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환경과

- 전화번호 : 055)940-3493

- FAX : 055)940-3759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경상남도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경상남도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단위로 <u>수립할 수 있다.</u></p> |
| <p>제3장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p> | <p><삭 제></p> |
| <p>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 <p><삭 제> <삭 제></p> |
|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 |
| <p>1.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p> | |
| <p>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p> | |
| <p>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p> | |
| <p>4. 그 밖에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 |
| <p>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 <p><삭 제></p> |
|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p> | |
| <p>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군 소속 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거창군의회 의원이나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p> | |

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

<삭 제>

<삭 제>

<삭 제>

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 추진
계획, 재정, 법제도, 녹색기술, 녹색
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
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
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 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기업 고충처리 분야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
회는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
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
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
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성장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직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
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
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
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등)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진을 위하여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부서장을 녹색성장책임관으
로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 건 | 비 고 |
|--------|-----|-----|
| |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신설 이유>

사.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자문위원회의 통합운영 근거 마련(법 제116조의2 신설)

- 1) 지방자치단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 자문기관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관은 조례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1호, 2018. 10. 30, 일부개정]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13.]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8. 13.]

<신설 이유>

다.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등 신설(영 제80조, 제80조의2 및 영 제80조의3 신설)

- 1) 「지방자치법」에 자문기관의 설치와 유사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자문기관은 업무의 특성상 또는 성질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자문기관은 최소한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
- 3) 불필요한 자문기관의 설치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이고, 자문기관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2.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13.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군은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군은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군은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군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군은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군은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군은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군의 책무)

- ①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군은 관할구역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④ 군은 관할구역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군이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 ①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 ② 주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 ③ 주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와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군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및 제8조에 따른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경상남도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군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군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①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이행상황의 점검·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③ 군수는 점검·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군 소속 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거창군의 회 의원이나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28항>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 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 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기업 고충처리 분야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성장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전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등)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장을 녹색성장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군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군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군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① 군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1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 ① 군수는 군의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 ③ 군수는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 ④ 군수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의 확대·보급에 노력한다.

제22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군수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23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24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할 것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3. 군,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4. 군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할 것

제25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군수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 ① 군수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는데 지원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96호선 외1)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103호('95.05.12) 및 경상남도 고시 제115호('79.05.24)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196호선, 2-197호선)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2월 14일

거창군수

1. 사업개요

| 종류 | 사업명 | 위치 | | 시행규모 | | | | | | 시행위치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읍 | 리 | 등급 | 류별 | 번호 | 연장 | 폭 | 면적 | 시점 | 종점 | | |
| 도시 계획 시설 | 도시계획도로 (소로2-196호선) | 가조 | 마상 | 소로 | 2 | 196 | 106 | 8 | 687 | 가조면 마상리 189-1 | 가조면 마상리 171-1 | 경고103호('95.05.12) | |
| | 도시계획도로 (소로2-197호선) | 가조 | 마상 | 소로 | 2 | 197 | 92 | 8 | 765 | 가조면 마상리 184-5 | 가조면 마상리 174-2 | 경고115호('79.05.24) |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사업명 : 가조 수월리(소로2-196호선 외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열람기간: 신문개제 익일로부터 14일간

4.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20. 06. 30.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붙임)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 적 (㎡) | 편입면 적 (㎡) | 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 비고 |
|-------|---------|-------|----|-----------|-----------|----------------------------------|-----|------------|-----|-------|
| | | | | | | 주소 | 성명 | 권리명 | 권리자 | |
| 합계 | | | | 8,448 | 1,452 | | | | | |
| 1 | 가조면 마상리 | 184-5 | 도 | 60 | 22 | 거창군 가조면 마상5길 51-16 | 정연중 | | | 2-197 |
| 2 | " | 184-3 | 전 | 716 | 179 |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470 | 이희자 | | | 2-197 |
| 3 | " | 185 | 과 | 986 | 142 | 안양시동안구평촌동 899-2 향촌아파트207동205호 | 김영선 | | | 2-197 |
| 4 | " | 186 | 과 | 2,469 | 285 | 안양시동안구평촌동 899-2 향촌아파트207동205호 | 김영선 | | | 2-197 |
| 5 | " | 174-2 | 전 | 196 | 59 | | 거창군 | | | 2-197 |
| 6 | " | 189-6 | 도 | 763 | 45 | | 거창군 | | | 2-196 |

| | | | | | | | | | | |
|----|---|-------|---|-----|-----|-------------------------------------|---------------|--|--|-----------|
| 7 | " | 188-5 | 대 | 507 | 11 |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89-1 | 장사준 | | | 2-19 6 |
| 8 | " | 188-2 | 과 | 59 | 59 |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89-1 | 장사준 | | | 2-19 6 |
| 9 | " | 188-3 | 대 | 132 | 132 |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89-1 | 장사준 | | | 2-19 6 |
| 10 | " | 187 | 과 | 936 | 229 |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6-1 | 동거창농업 협동조합 | | | 2-19 6 |
| 11 | " | 172-2 | 전 | 739 | 206 |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486-1 | 배화자외 1인 | | | 2-19 6 |
| 12 | " | 171-2 | 전 | 529 | 67 | 거창군 거창읍 강양4길 10, 502호(대동신흥빌라) | 손정선외 1인 | | | 2-19 6 |
| 13 | " | 171-1 | 전 | 356 | 16 | | 거창군 | | | 2-19 6 |

※ 관계도면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 및 열람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주소: 50132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이나 전화(055-940-3592, 3595), FAX(055-940-3579), Email : chanung@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끝”.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조성과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다. 위원장 직무와 그 대행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회의, 간사를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마. 우선조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바. 필요경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2. 13. ~ 2019. 3. 4. / 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 전 화 : 055-940-3780
- 팩 스 : 055-940-373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드림아동담당/

☎ 940-3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 건 | 비 고 |
|--------|-----|-----|
| | | |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촉) 거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우선 조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와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자료 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필요경비 지원) 군수는 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8822호, 2018. 4. 24, 일부개정]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6.>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위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위천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 나. 위 치 :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일원
- 다. 사 업 량 :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 라. 사업기간 : 2019. 2. ~ 2021. 12.
- 마.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97번지 등 58필지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장물건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055-940-8272)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 나.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 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6.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및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나.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가. 보상조서는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음.
-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 다. 본 신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신문 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라. 기타 보상관련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개발담당 (☎055-940-82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서(토지)

| 구분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지 적 (㎡)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비고 |
|----|------------|--------|----|-----------------|-----------------|-------------|---------------------------------|-------|----|----------|----|
| | | | | | | 성 명 | 주 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
| 1 | 위천면 장기리 | 497 | 대 | 46 | 26 | 지부 후원회 | 국(경찰청) | | | | |
| 2 | 위천면 장기리 | 155-1 | 대 | 300 | 13 | 거차 마을회 | 위천면 장기리 157-5 | | | | |
| 3 | 위천면 장기리 | 799-11 | 답 | 63 | 17 | 농식품부 | | | | | |
| 4 | 위천면 장기리 | 419-18 | 답 | 105 | 13 | 김*순 | 위천면 장기리 419-9 | | | | |
| 5 | 위천면 장기리 | 799-12 | 구 | 7 | 7 | 농식품부 | | | | | |
| 6 | 위천면 장기리 | 799-13 | 답 | 63 | 62 | 농식품부 | | | | | |
| 7 | 위천면 장기리 | 419-2 | 답 | 1,108 | 1,074 | 진*부 | 거창읍 소만2길 10, 102동 909호 | | | | |
| 8 | 위천면 장기리 | 418-28 | 답 | 20 | 12 | 경상남도 | | | | | |
| 9 | 위천면 장기리 | 417-3 | 답 | 3 | 1 | 경상남도 | | | | | |
| 10 | 위천면 장기리 | 417-4 | 답 | 22 | 22 | 경상남도 | | | | | |
| 11 | 위천면 장기리 | 622-1 | 도 | 62 | 4 | 국토 교통부 | | | | | |
| 12 | 위천면 장기리 | 417-5 | 답 | 13 | 13 | 경상남도 | | | | | |
| 13 | 위천면 장기리 | 418-1 | 답 | 495 | 350 | 경*분 | 위천면 장기리 430 | | | | |
| 14 | 위천면 장기리 | 416-5 | 답 | 191 | 131 | 경상남도 | | | | | |
| 15 | 위천면 장기리 | 416-6 | 답 | 540 | 247 | 경상남도 | | | | | |
| 16 | 위천면 장기리 | 622 | 도 | 354 | 334 | 국토 교통부 | | | | | |
| 17 | 위천면 장기리 | 417-6 | 답 | 118 | 84 | 경상남도 | | | | | |
| 18 | 위천면 장기리 | 417-2 | 답 | 503 | 472 | 신철범 |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71 지산우방 102-908 | | | | |
| 19 | 위천면 장기리 | 611-1 | 천 | 1325 | 265 | 국토 교통부 | | | | | |
| 20 | 위천면 장기리 | 478-17 | 대 | 35 | 17 | 최*준 | 부산시 북구 만덕동 824-24-402 | | | | |
| 21 | 위천면 장기리 | 478-6 | 도 | 53 | 2 | 신*룡 | | | | | |
| 22 | 위천면 장기리 | 472 | 대 | 631 | 119 | 강*선 등 4명 | 거창읍 대동리 105-4 | | | | |
| 23 | 위천면 장기리 | 621 | 구 | 641 | 30 | 농식품부 | | | | | |
| 24 | 위천면 장기리 | 473-1 | 대 | 205 | 4 | 전*익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 11 307-201 | | | | |
| 25 | 위천면 장기리 | 476-3 | 천 | 181 | 11 | 박*걸 | 위천면 장기리 443 | | | | |
| 26 | 위천면 장기리 | 476-2 | 도 | 139 | 39 | 국토 교통부 | | | | | |
| 27 | 위천면 장기리 | 475-3 | 도 | 350 | 3 | 초계정씨 종중 | | | | | |

| 구분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지 적 (㎡)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비고 |
|----|------------|------------|----|----------------|-----------------|-------------|---|-------|----|----------|----|
| | | | | | | 성 명 | 주 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
| 28 | 위천면 장기리 | 624 | 도 | 889 | 20 | 국토 교통부 | | | | | |
| 29 | 위천면 장기리 | 489-7 | 대 | 68 | 1 | 이*호 | 위천면 장기리 470 | | | | |
| 30 | 위천면 장기리 | 513-2 | 도 | 579 | 3 | 신*문 | | | | | |
| 31 | 위천면 장기리 | 513-4 | 대 | 223 | 2 | 정*순 등 2명 | 위천면 장기리 490 | | | | |
| 32 | 위천면 장기리 | 514-4 | 대 | 187 | 1 | 박*자 | 514-4 | | | | |
| 33 | 위천면 장기리 | 515-1 | 대 | 807 | 63 | 정*남 | 위천면 장터길 30-14 | | | | |
| 34 | 위천면 장기리 | 515-3 | 대 | 740 | 72 | 박*규 | 대구시 서구 내당동 463-8 광장타운 202-107 | | | | |
| 35 | 위천면 장기리 | 617-1 | 구 | 1,336 | 6 | 농식품부 | | | | | |
| 36 | 위천면 장기리 | 623-1 | 도 | 1496 | 152 | 국토 교통부 | | | | | |
| 37 | 위천면 장기리 | 424 | 전 | 1139 | 53 | 경*분 | 위천면 장기리 430 | | | | |
| 38 | 위천면 장기리 | 420-1 5 | 답 | 15 | 1 | 김*복 | 위천면 금원산길 9 | | | | |
| 39 | 위천면 장기리 | 421-2 6 | 대 | 30 | 1 | 김*복 | 위천면 금원산길 9 | | | | |
| 40 | 위천면 장기리 | 467-1 | 대 | 456 | 50 | 김*순 | 위천면 장기리 467-1 | | | | |
| 41 | 위천면 장기리 | 621 | 구 | 641 | 56 | 농식품부 | | | | | |
| 42 | 위천면 장기리 | 611-1 | 천 | 325 | 150B | 국토 교통부 | | | | | |
| 43 | 위천면 장기리 | 482-1 | 천 | 383 | 78 | 임*리 | 위천면 장기리415 | | | | |
| 44 | 위천면 장기리 | 482-2 | 답 | 1,739 | 13 | 신*원 | 인천시 연수구 면우금로83번길 12, 119동103호 | | | | |
| 45 | 위천면 장기리 | 483-1 | 답 | 489 | 297 | 박*자 |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1136-49 소라빌라 비이도 202호 | | | | |
| 46 | 위천면 장기리 | 483-2 | 답 | 588 | 262 | 박*자 | “ | | | | |
| 47 | 위천면 장기리 | 617-3 | 구 | 2,804 | 19 | 농식품부 | | | | | |
| 48 | 위천면 장기리 | 492-2 | 답 | 182 | 20 | 원장기 마을회 | 위천 장기리 490 | | | | |
| 49 | 위천면 장기리 | 492-5 | 답 | 69 | 63 | 신한농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 3로 113, 시동 | | | | |
| 50 | 위천면 장기리 | 492-1 | 답 | 158 | 3 | 김*두 | 위천면 장기리 430-4 | | | | |
| 51 | 위천면 장기리 | 493-7 | 대 | 156 | 11 | 김*두 | “ | | | | |
| 52 | 위천면 장기리 | 493-2 | 전 | 798 | 29 | 김*두 | “ | | | | |
| 53 | 위천면 장기리 | 493-3 | 답 | 267 | 226 | 김*두 | “ | | | | |

| 구분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지 적 (㎡)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비고 |
|----|------------|-------|----|------------|-----------------|-----------|-----------------------------|-------|----|----------|----|
| | | | | | | 성 명 | 주 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
| 54 | 위천면 장기리 | 617-1 | 구 | 1,336 | 631 | 농식품부 | | | | | |
| 55 | 위천면 장기리 | 493-4 | 전 | 701 | 71 | 김*두 | 위천면 장기리 492-1 | | | | |
| 56 | 위천면 장기리 | 494 | 답 | 1,476 | 372 | 한*분 | 거창읍 강변로 177, 702호(마진프라자) | | | | |
| 57 | 위천면 장기리 | 616-1 | 도 | 4,982 | 275 | 국토 교통부 | | | | | |
| 58 | 위천면 장기리 | 494-1 | 도 | 1,653 | 31 | 국토 교통부 | | | | | |

○ 보상조서(지장물)

| 순번 | 소재지 | 지 번 | 물건의종류 | 구조 및 규격 | | 수량 | 단 위 | 소 유 자 | | 비 고 |
|----|------------|--------|-------|---------|----------------|------|----------------|---------------|-----|-----|
| | | | | | | | | 주소 | 성 명 | |
| 1 | 위천면 장기리 | 472 | 집 | | 블럭 스레이 트 | 42.6 | m ² | 거창읍 대동리 105-4 | 강*선 | |
| | | | 가추 | | 블럭 스레이 트 | 5.5 | m ² | | | |
| | | | 가추 | | 블럭 판넬 | 5.9 | m ² | | | |
| 2 | 위천면 장기리 | 475-3 | 계사 | | 조립식 판넬 | 14.0 | m ² | 위천면 장기리 443 | 곽*걸 | |
| | | 475-5 | 견사 | | 판넬 스레이트 | 2.0 | m ² | | | |
| | | 490-23 | 기타 | | 조립식 판넬 | 8.8 | m ² | | | |
| 3 | 위천면 장기리 | 489-7 | 기타 | | 조립식 판넬 | 16.9 | m ² | 위천면 장기리 470 | 이*호 | |
| 4 | 장기리 위천면 | 467-1 | 가옥 | | 목조 기와 | 29.1 | m ² | 위천면 장기리 467-1 | 김*순 | |
| | | 467-1 | 축사 | | 블럭 스레이트 | 26.3 | m ² | | | |
| | | 467-1 | 화장실 | | 벽돌조 | 2.5 | m ² | | | |
| 4 | 장기리 위천면 | 611- | 가옥 | | 블럭 스레이 트 | 25.7 | m ² | 위천면 장기리 480-6 | 박*호 | |
| | | | 담장 | | 블럭 | 16.0 | m ² | | | |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공고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19년 2월 11일

거창군수

1. 사업명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7개 사업
2. 모집인원 : 117명
3. 접수기간 : 2019. 2. 11.(월) ~ 2. 22.(금)
※ 접수기간 중 모집인원이 미달할 경우 수시 모집
4.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
- 단, 사업내용에 따라 소득수준 기준 상이
5.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6. 신청제한 : **1인당 1개 서비스 신청**
7.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 기타 증빙서류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으로 부양관계 및 소득재산 상태가 확인되지 않거나, 소득재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 의사 소견서, 진단서, 추천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함)

- 붙임 1. 안내문 1부.
2.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1부.
3. 신청서식 1부.

별도붙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1부. 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은 30일)

| | | | | | | |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 |
| | 주소 | | | 휴대전화 전자우편 | | | |
| 가족 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동거여부 | 건강상태 (장애/질병) | 직장명 | 전화번호 (집/직장) |
| | | | | 동거인 | | | |
| | | | | | | | |
| | | | | | | | |
| ※ 배우자 관계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 | | | | | | |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 성명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 | | | | | | | | |
|-------------------------|---|---|---|--|---|----------------|--|--|
| 읍면동 주민센터 | □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 지원대상자 | 신청구분 | | | | | |
| | | 필요서비스 |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종일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맞춤,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방과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3~5세)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유아학비(3~5세),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6~12세) | | | | | |
| | | 필요서비스 |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종일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맞춤,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방과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3~5세)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유아학비(3~5세),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6~12세) | | | | | |
| | | 필요서비스 |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종일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맞춤,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방과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3~5세)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유아학비(3~5세),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6~12세) | | | | | |
| | * 어린이집(0~2세) 종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맞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 방문 서비스 | 지원대상자 | 신청요건 |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 1~3등급 □ 중증질환자 | | | |
| | | 주간보호 서비스 | 지원대상자 | 신청요건 | □ 월 27시간 □ 월 36시간 / □ 치매가족휴가지원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 1~3등급 □ 중증질환자 | | | |
| | | 단기가사 서비스 | 지원대상자 | 신청요건 | □ 월 9일 □ 월 12일 / □ 치매가족휴가지원 □ 독거노인 □ 고령부부(만75세 이상)가구 □ 조손가정 □ 배우자질환가구 | | | |
| | □ 가사간병 방문지원 | 지원대상자 | | | | | | |
| | | 서비스시간 | □ 월 24시간 □ 월 27시간 □ 월40시간 | | | | | |
| 신청요건 (1개 선택) | | <input type="checkbox"/> 1~3급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중증질환자 <input type="checkbox"/> 희귀난치성질환자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 <input type="checkbox"/> 조손가정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 | | | |
| □ 장애 아동 가족 지원 | 발달 재활 서비스 | 지원대상자 | 장애 유형 | <input type="checkbox"/> 뇌병변장애 <input type="checkbox"/> 청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시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언어장애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type="checkbox"/> 미등록(영유아) | | | | |
| | | 장애등급 |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미등록 | | | | | |
| |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input type="checkbox"/> 언어치료 <input type="checkbox"/> 미술치료 <input type="checkbox"/> 음악치료 <input type="checkbox"/>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언어 발달 지원 | 지원대상자 | | | | | | | |
| |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언어발달진단 □ 언어치료 □ 청능치료 □ 기타() | | | | | | |
| □ 발달 장애인 지원 |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지원대상자 | 자녀와의 관계 | □ 부 □ 모 □ 기타() | | | | |
| | | 장애 유형 및 등급 | 장애유형 |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type="checkbox"/> 미등록(영유아) | 장애 등급 | □ 1급 □ 2급 □ 3급 | | |
| | 주간 활동 및 방과후 돌봄 지원 | 장애 유형 및 등급 | 장애유형 |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 장애 등급 | | | |
| | | 지원유형 | □ 주간활동서비스 □ 방과후돌봄서비스 | | | | | |
| □ 지역사회 서비스 | 지원대상자 | 서비스명 | | | | | | |
| | 지원대상자 | 서비스명 | | | | | | |
| □ 여성 청소년 보육 지원 | 지원대상자 | 지원신청 | |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 | | | |
| | 지원대상자 | | | |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활동지원 (갱신신청) | 지원대상자 | 장애등급 | | | <input type="checkbox"/>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input type="checkbox"/> 3급 |
| | 지원유형 | <input type="checkbox"/> 활동지원급여 <input type="checkbox"/> 추가급여(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input type="checkbox"/> 긴급활동지원 | | | |
| | 추가 급여 해당자만 (중복 체크가능) | <input type="checkbox"/> 1인가구 <input type="checkbox"/> 취약가구 <input type="checkbox"/> 출산 <input type="checkbox"/> 학교생활 <input type="checkbox"/> 직장생활 <input type="checkbox"/> 자립준비 <input type="checkbox"/> 보호자일시 부재 <input type="checkbox"/>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 | | |
|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지원대상자 | 출산(예정)일 | | | 년 월 일 |
| | 지원 유형 | <input type="checkbox"/> 단태아(<input type="checkbox"/> 첫째아, <input type="checkbox"/> 둘째아,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이상), <input type="checkbox"/> 쌍생아(<input type="checkbox"/> 둘째아,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이상), <input type="checkbox"/> 삼태아 이상, <input type="checkbox"/> 중증장애인 산모 | | | |
| | 신청요건 | 기본지원대상 | <input type="checkbox"/>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소득기준 이하 | | |
| | | 예외지원대상 (해당자만) | <input type="checkbox"/>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input type="checkbox"/>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input type="checkbox"/> 새터민 산모 <input type="checkbox"/> 결혼이민 가정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산모 <input type="checkbox"/>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input type="checkbox"/> 분만 취약지 산모 <input type="checkbox"/>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 | |
| | 서비스 제공 장소 |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보건소 주민센터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층 기저귀 교체분유지원 | 지원대상자 | | | |
| 지원유형 (중복 체크가능) | | 기본지원대상 | <input type="checkbox"/> 기저귀 | <input type="checkbox"/> 조제분유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 |
| | | 예외지원대상 (지자체 자체사업) | <input type="checkbox"/> 기저귀 | <input type="checkbox"/> 조제분유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 | | | | | 확인 (√ 체크) |
|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 | | | □ |
|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 | |
|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 | | |
| <유의사항> | | | | | 확인 (√ 체크) |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료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 | □ |
| 3.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 | □ |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 | | □ |
| 추가제출 서류 |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 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 |
|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 | | |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 | | | | |
|--------|------------|---|--------|----------|--|
| 발급 대상자 | 대상자 | 성명(한글) | 주민등록번호 | | |
| | 대리인 | 성명(한글) | 생년월일 | 대상자와의 관계 | |
| |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 ① 징구 ② 미징구 ※ 만14세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 | |

| | | | |
|------|--|-------|---|
| 신청구분 |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 재발급사유 |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
|--------|-----|--|---------------------------------|------|--|
| 카드 수령지 | 수령인 | <input type="checkbox"/> 발급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보호자(가족 등) | 대상자와의 관계 : ※ 수령자가 보호자인 경우 기재 | | |
| |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 수령지 |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 자택, 직장, 읍.면.동주민센터 중 희망 수령지를 체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 | | |
| | 자택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전화번호 | | |
| | 직장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전화번호 | | |

| | | | |
|------------|---|-----|------|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 | |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대상 : 만14세미만 아동,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다만 .16.11.30일(수)부터 .16.12.13일(화)까지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전체 포함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 자산조사 및 자격정보 일체 : 소득·재산 등 자산정보 및 장애유형·등급 등 자격정보
 - 국민행복카드 정보 일체 : 신청정보·카드번호·이용내역 등
- 수집·이용 목적
 - 전자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 및 자격 결정에 관한 업무
 - 바우처포인트 생성 및 이용대금 정산(본인부담금 납부·환급 포함)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공·결제(보육료 및 유아학비 호환결제 포함)에 관한 업무
 - 국민행복카드 카드 제작 및 배송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증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 기타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 근거 안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 감 정 보 : 장애 및 질병 등 건강정보
- 관 련 법 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제3자 제(목적·항목·제공처) 안내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성명, 주소, 연락처 : 해당 카드사
- 보육료·유아학비 호환결제
 - 국민행복카드번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증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등 제도 운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이용내역 : 유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전자이용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대리신청인 포함)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 개인정보 제공동의 | <p>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을 위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항목 : 성명, 연락처(주택, 휴대전화), 서비스신청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명 - 제공목적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본인 확인 - 제공받는 기관 : 신청인이 지정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카드사) - 보유기간 : 카드발급 완료 등 보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p> |
|-----------|---|

| | | | | | |
|--------------|-------------|----------|------------|----------|----------|
| 신청카드 (택1) | BC카드 | |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
| | [] IBK기업은행 | [] NH농협 | [] SC제일은행 | | |
| | [] 경남은행 | [] 광주은행 | [] 대구은행 | | |
| | [] 부산은행 | [] 수협은행 | [] 우리은행 | | |
| | [] 전북은행 | [] 제주은행 | [] 우체국 |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국민행복카드 사업자(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대표 귀하

안내 및 유의 사항

▶ 신청대상 : 만19세이상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신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은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 및 결제가 가능하므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행복카드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카드사별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신용심사결과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압류자, 신용불량자 등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가 발급되며,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전용카드가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 | | | |
|------------------------|--------|--|--|--|
| 카드발급 신청인 (지원대상자) | 성명(한글)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법정대리인 | 성명(한글) | | | |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상기 본인(법정대리인)은 카드 발급 신청인을 대리하여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 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인이 만14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기재합니다.